

1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등록면허세 면허의 종류(별표1)	<input type="checkbox"/>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면허의 종류(별표) 신설
○ <신설>	○ 「의료기기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(제3종 275호)
○ <신설>	○ 「원자력안전법」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,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(제4종 213호)
○ <신설>	○ 「원자력안전법」 제63조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·처리·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·운영허가(제4종 214호)
○ <신설>	○ 「원자력안전법」 제52조에 따른 핵원료 물질 사용 신고(제5종 제49호)
<input type="checkbox"/> 등록면허세 면허의 종류(별표1)	<input type="checkbox"/>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면허의 종류(별표) 정정
○ 「원자력안전법」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 장치의 생산·판매·사용·이동 사용 허가(제4종 103호)	○ 「원자력안전법」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 장치의 생산·판매·사용(소지·취급 포함)·이동 사용 허가(제4종 103호)
○ 「원자력안전법」 제35조에 따른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 허가 및 「원자력안전법」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 허가(제4종 104호)	○ 「원자력안전법」 제35조에 따른 핵원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의4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(제4종 104호)